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개정('24. 3. 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시행 2024.3.5.)으로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는 국가 안전과 국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동안 보안 관리 체계에서 도외시되어왔음.

-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¹⁾」 제7조제2의2호는 이러한 기관들을 보안

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관리 대상에 포함 시켜 보안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 우리 구 또한 이와 같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은 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한 것임.
- 안 제1조(목적)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의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과의 연계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함.
- 안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마포구가 설립한 출자 및 출연 기관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포함함.
 - 사이버보안 업무의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분명해지며,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여 향후 새로운 출자 및 출연기관이 추가될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제정안은 2024. 3. 5. 개정·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음.
- 또한, 위임 조례는 위임 내용 외에 용어 정의 등을 하는 경우 실익이 없고, 추후 법령 개정 시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어 위임 내용만 규정한 것²⁾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令)’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서울특별시 정보보안과-775호/2024.7.9.)
 : 참고조례 1안과 2안을 첨부하였음. 1안 전문과 2안 제1조(목적)·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법제처가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시 권고한 필수 제정사항이고, 2안의 그 외 나머지 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시 자치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제시한 사항임.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